

제413회 정례회

'23. 11. 29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조성태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11월 17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,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외국인주민의 정의 및 지위(안 제2조 및 제3조)
-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(안 제6조 및 제7조)
- 충청북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(안 제8조 및 제9조)
- 업무의 위탁,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 등(안 제15조~제1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인주민은 인구청년정책담당관, 다문화가족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었음.
-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는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고, 행정 및 사업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.
- 이에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, 외국인주민 업무의 효율적인 행정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, 외국인 주민 등 용어를 명료하게 정의하였다고 판단됨.
- 안 제3조는 외국인주민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, 외국인주민이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○ **안 제5조**는 도지사에게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,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,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.

다만, 지원계획 수립 시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주민에 관한 일원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○ **안 제6조**는 지원대상에 관한 것으로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당함.

○ **안 제7조**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, 도지사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함.

○ **안 제8조**는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, **안 제9조**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기능을 규정함.

○ **안 제17조**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, **안 제18조**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

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
외국인주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를 일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었음.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외국인주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- 또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